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: 2022. 7. 13 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## 1. 제안이유

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체계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,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대상시설 :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

1) 시설현황 : 동적공간, 정적공간, 사무실, 화장실 등

시설명	소재지	시설면적	정원	개소시기 (예정)	비고
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	시흥대로 164, 2층(시흥1동)	134㎡ (약 40평)	25명	22. 11월	백산초 인근

나. 주요 위탁내용

1)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5년(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)

2) 위탁내용 :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

가) 지역 초등학생 돌봄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

나) 지역연계형 돌봄 사업 추진 및 초등학생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 수행

다) 수요자(초등학생) 모집 및 이용 아동 관리에 관한 사항

라) 키움센터 시설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마) 위탁시설 관리, 운영에 관한 민·형사상 책임 및 민원에 관한 사항 관리 등

3) 선정방법 : 수탁기관 공개모집

4) 위탁금(안) : 연 152백만원(국 18백만원, 시 121백만원, 구 13백만원)

### 3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가.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
- 나.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탄력적 대응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아동복지법 제44조의2
  - 2)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
  - 3)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
  - 4)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
- 나. 기타사항
  - 1) 2022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·운영 계획 【교육지원과-3072 '22. 3. 4.】

# 관 계 법 령

## 아동복지법

### 제44의2(다함께돌봄센터)

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##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  2. 위탁계약기간
 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  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  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  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  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  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##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
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## 제4조의2(민간위탁사무의 내용)

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아동·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2. 교육·도서관·체육·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보건·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4. 문화·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5. 자활·근로자복지·취업·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6. 교통·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7. 청소·경비·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8.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

### 제9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위탁)

-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-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·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부지, 건물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.